

2차시

I.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제도

1)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제도 추진 배경 및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비극적인 증평 모녀사건이 발생하면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예방에 대한 필요가 높아졌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목적 :

이렇게 만들어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④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이 같은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에 의거해 신고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 신고의무자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종사자와 활동지원인력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를 비롯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도 포함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장 및 통장을 비롯해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이

포함되며,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직원**도 교육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 3.

3) 교육 시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에 의거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요.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4) 교육 내용

그렇다면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보호 절차** 이 3가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5) 교육 방법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은 보통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6).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또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교육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 결과를 다음해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지자체·중앙행정기관은 3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실시결과를 제출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긴급복지신고의무자 법령 및 범위

다음으로는 긴급신고의무자 법령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의무자 범위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의무 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등학교법 및 고등학교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

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 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및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입니다.

2) 신고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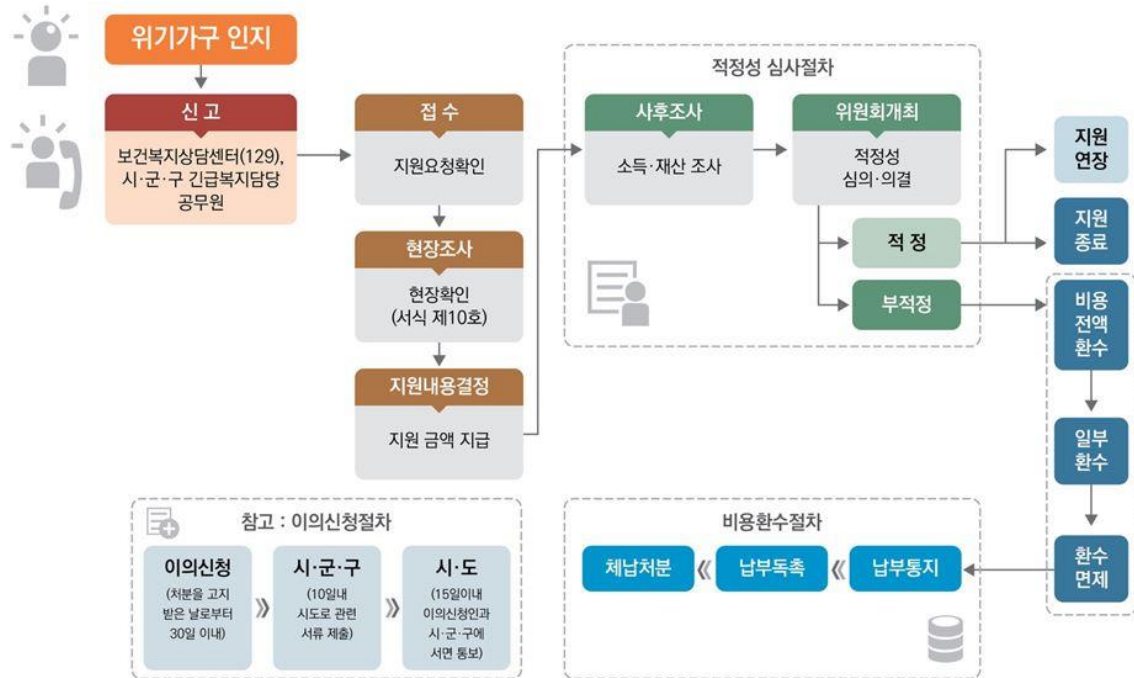
- 신고의무 관한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신고의무와 관련된 조항에 의거해 **직무수행 과정에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특히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

4.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가 직무 수행 중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이를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에 소개해 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도>

1)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요청과 신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긴급지원 대상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팩스·eMail 등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신청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주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 다음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접수는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긴급복지신고의무자에게서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관련기관에 연계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2) 현장확인

- 두 번째 과정은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입니다.
- 직접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건을 연계 받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장확인 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등록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지원결정 및 실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4) 사후조사

- 다음 절차는 '사후조사'로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적정성 심사

- 그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6) 지원 연장결정

-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연장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연장결정은 시·군·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7)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만약 이 과정 중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에 드러난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습니다.

6.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긴급복지지원 사례는 모텔 장기투숙 하고 있던 네 가족의 사연입니다.

이정수(가명)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암투병을 하고 있는 장모님과, 아들 1명과 함께 모텔에서 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일자리를 잃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월세가 10개월 가량 밀려있던 상황. 급기야 모텔에서는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며 강제퇴거 독촉하자 그는 모텔사장과 다투하던 도중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수씨 가족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게 된 경찰관이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주었고 이후 국가긴급복지를 통해 급한 생활비를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수씨 가족은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긴급주거제도를 통해 원래 살던 곳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후 무엇보다 정수씨는 말기 암환자인 장모님을 모텔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간병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불안정한 생활이 안정되자 아들은 취업에 성공해 독립하는 기쁜 일이 정수씨 가족에게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실거주지에 되어있지 않아 기초연금도 신청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출동한 경찰관이 자칫하면 단순 폭력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을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 보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대상자를 주민센터 측에 신고한 덕택에 발굴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경찰관과 학교 등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바로 이어 살펴볼 사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사례입니다.

인적사항 파악 및 병원비 지원 검토를 요청하는 112의 신고 전화로 발견된 자살시도자 김빛나(가명)씨. 그녀는 내방상담을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복지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종료 후 다시 상담하기로 한 대상자였습니다. 빛나씨는 신고를 전달받은 담당자가 곧바로 입원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한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웃들에게 여성이 살던 원룸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현장방문을 해보니 강아지가 7마리가 철창 속에 갇혀 있던 빛나씨의 집은 그녀의 마음처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미혼의 1인 단독가구로 부모와도 단절되었던 대상자의 강아지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차마 외면 할 수 없어 7마리의 강아지를 돌보던 담당자들은 이대로 강아지를 방치해두는 건 학대나 다름없기 때문에 강아지를 입양을 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견주를 설득했고 결국 5마리는 입양을 보내고 2마리는 빛나씨가 퇴원할 때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했었던

그녀는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 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맞춤형급여를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우울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담당경찰관의 신고**와 강아지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웃의 신고**로 발굴된 사례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던 자살시도자는 물론이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었던 강아지까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동반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있던 한 어머니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콜센터에 걸려온 한 어머니의 절박한 전화 한 통.

“더 이상 주변에 도움을 청할 형편이 안돼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둘째(자폐, 심한 장애)를 치료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남편과 함께 착실히 두 아이를 기르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임성애(가명)씨.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기를 당하면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이후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고 맙니다.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절망하던 그녀는 동반자살 방법을 검색하다 우연히 129콜센터를 발견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가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정보를 몰랐던 임성애씨는 긴급복지사업을 알게 되었고 삶의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면서 경제적인 불안감이 서서히 안정되었고, 자신을 자책하며 술독에 빠져있던 남편도 서서히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시작하며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몸이 불편한 둘째를 돌봐주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되면서 부부 모두 정기적인 일자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가까운 지인들의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는 성애씨.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 그녀는 조금씩 예전처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